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198호
- 발 의 자 : 김구현 의원 외 11명
- 발의일자 : 2016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해야 할 정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의 제5조(정관)가 「민법」 제 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3.24.)·시행(2014.9.25.)됨에 따라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체계상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하게 된 취지를 살펴보면,

출자·출연기관은 「민법」, 「상법」, 개별법률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한편,

채용비리 및 방만한 경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지적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인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정·시행된 것임.

1) 이러한 개별법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나. 출연의 근거

-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2015년 1월 30일 지정·고시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6호, 2015.1.30. 제정·시행)

서울시 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출자기관 : 서울관광마케팅(주)

다.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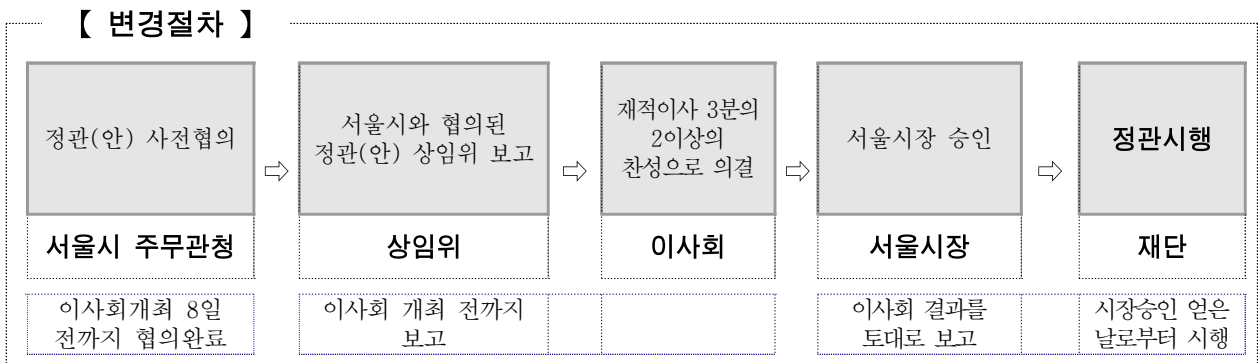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각종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의 기본적인 규정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역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의 제정안을 준용하여 기술이 되고 있으므로 그 조문내용의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p> | <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p> | <p>「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개정안</p> |
|---|---|---|
| <p>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출자·출연 기관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 <p>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 <p>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다만, 제2항의 경우,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조문내용에 대하여,

현행 서울시장 승인 전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의 주무관청은 서울시로 승인권자와 허가권자가 동일함에 따라 이는 중복문구로써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재단 정관변경 절차 >



| 개정안 | 수정의견 |
|---|--|
| <p>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11. (생략)</p> <p>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11. (현행과 같음)</p> <p>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